

• 그밖에 새해 달라지는 주요 양돈정책 •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

300제곱미터 이상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한우·육우·젓소) 표시를 해야 한다.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식육종류 모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3백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대의원 선출 시 전수조사 폐지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해 4년마다 실시하던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사육두수 전수조사가 폐지되고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했다. 농림부는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두수 전수조사를 실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 통계결과를 대체토록 했다.

☒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올해 2월부터 축사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축사 신축시 ㎡당 1만2천원 가량 부과됐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설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인증종류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했다. 올 처음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신설되었다.

☒ 공익수의사제도 신설 운영

금년부터 매년 150명의 공익 수의사가 선발된다. 지난해 신설된 공익수의사제도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가축방역 등의 업무로 군복무를 대체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효, 올해부터 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돼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05년 9월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물가공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모든 재료를 최소 5가지 이상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제유류로 한정됐던 영양소 표시가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돼 이들 식품에도 반드시 영양소를 표시해야 한다.